

의안번호	2202427
의 퇴 인	박홍배 의원
회 답 일	2024.8.13.
추 계 번호	24B26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9조(보건 조치)(제1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함 7. 폭염·한파·황사 등 기후 여건(이하 “기후여건”이라 한다)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의무규정
2	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후여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제2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제3항)	근로자는 기후여건으로 인하여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제4항)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등에 보고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제5항)	관리감독자등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52조의2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제6항)	사업주는 기후여건으로 인하여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	의무규정
9	안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 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이하 “기계·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폭염, 한파, 황사 등의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냉·난방 시설 등을 설치·가동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과 제52조, 제52조의2에 따른 작업중지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고용노동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9조(보건조치)	• 미대상 –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해야하는 보건조치에 ‘폭염·한파·황사 등 기후 여건(이하 “기후여건”이라 한다)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애’를 포함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2	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미대상 - 개정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안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 미대상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여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지를 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4~8	안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제2항~제6항)	• 미대상 - 개정안은 근로자 및 사업주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9	안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제1항)	• 미대상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상 여건에 의한 위험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0	안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제6항)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정안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¹⁾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²⁾,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³⁾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사업대상자의 규모와 지원단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근로자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고용노동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벌금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⁴⁾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
-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이하 “기계·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폭염, 한파, 황사 등의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냉·난방 시설 등을 설치·가동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후여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4)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직무대리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